

<붙임 1-(1)>

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내역

(단위 : 백만원, %)

보고유형	신규		
대주주명 및 관계	정기홍(임원)		
신용공여의 주체 및 형태	영 제 38 조 제 2 항 1.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(근속기간 중에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)과 1 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	신용공여개시일	2013.11.15
		신용공여종료일	2023.11.15
신용공여 약정금액	70.30	신용공여 법정한도	70.30
금리(수수료)	6.00	주요특별약정	임직원 생활안정자금 대출규정 적용
담보의 종류	-	자금의용도	임직원 생활안정자금대출
신용공여 합계액 (잔액기준)	70.30 (0)	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	62.09 (13 년 3 월말)

기재상의 주의

- 1 신용공여액은 법 제 34 조제 2 항을 기준으로 작성
- 2 신용공여의 형태는 영 제 38 조제 2 항 각 호의 형태를 작성
2. "비율"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
3. 신용공여합계액은 신용공여합계액을 한도기준으로 기재하고 ()내는 잔액기준으로 기재

■ 첨부서류

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1 부